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조합원 취소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22-012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2.20.)로부터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1.30.(금)	2026.03.24.(화)	2026.03.30.(월)	2026.04.02.(목)	2026.04.03.(금)

2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건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1522-0125)**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잔여세대(무순위)	○				X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4.(화)이며**,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69입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3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1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여건, 선택옵션사항,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의 공급세대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조합원취소분)' 일반분양의 잔여세대로 동일 단지의 일반분양 공고와 착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1.30.(금))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2.20.)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3.30.(월)	2026.04.02.(목)	2026.04.03.(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건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1) ■ 문의 : ☎1522-0125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25층 6개동 총 500세대(조합300세대, 일반분양141세대, 임대18세대 포함) 중 조합원취소분 일반분양 41세대의 잔여 27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69	01	052.1850	52	1	106	1604
	02	063.8777	63	9	101	1301
					102	1005, 1105, 1505, 1506, 2001
					104	1501, 1701, 2001
	03	074.9952	74	4	101	1405, 1106
					105	806, 1206
	04	084.9550A	84A	6	102	404, 1104
					104	804
					105	404, 704, 804
	05	084.8815B	84B	7	101	1103, 1803
					102	303, 503, 1003, 1603
					105	603
	합 계				27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정액제 (계약시)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5%)	2차(15%)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
								2026.04.10.	2026.12.22.	2027.02.22.	2027.08.22.	2027.12.20.	
52	106동 4호	6층	1	204,938,420	291,761,580	496,700,000	10,000,000	74,505,000	74,505,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188,680,000
63	101동 1호 102동1-5-6호 104동1호	10~17층	7	247,477,480	352,322,520	599,800,000	10,000,000	89,970,000	89,97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229,920,000
		20층	2	251,232,140	357,667,860	608,900,000	10,000,000	91,335,000	91,335,000	60,890,000	60,890,000	60,890,000	233,560,000
74	101동 5-6호 105동 6호	8~14층	4	282,961,080	416,838,920	699,800,000	10,000,000	104,970,000	104,970,000	69,980,000	69,980,000	69,980,000	269,920,000
84A	102동 4호 104동 4호 105동 4호	4층	2	301,239,260	428,860,740	730,100,000	10,000,000	109,515,000	109,515,000	73,010,000	73,010,000	73,010,000	282,040,000
		7~11층	4	313,988,600	447,011,400	761,000,000	10,000,000	114,150,000	114,1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94,400,000
84B	101동 3호 102동 3호 105동 3호	3~5층	2	303,137,220	431,562,780	734,700,000	10,000,000	110,205,000	110,205,000	73,470,000	73,470,000	73,470,000	283,880,000
		6~18층	5	315,969,080	449,830,920	765,800,000	10,000,000	114,870,000	114,870,000	76,580,000	76,580,000	76,580,000	296,32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구 분	금융 기관	납부 계좌	예 금 주
분양대금	우리 은행	1005-804-708546	삼산대보아파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 은행	1005-204-715153	두산건설(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우리 은행	1005-404-708279	두산건설(주)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6동 1604호 홍길동 : 1061604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상세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당사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무순위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02.(목) ~ 2026.04.1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4.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본인 생년월일부터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4.)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반드시본인발급용에만함(대리인발급불가/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서명으로대체가능(본인계약시에만가능)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또는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증명하는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등) · 기타무주택자임을증명하는서류
		○	당첨 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제출 시 추가제출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4.03.(금) 10:00 ~ 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일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여권정보확인서+본인 여권 포함제출) 등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대리인 계약 시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여권정보확인서+본인 여권 포함제출)등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09.0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LTV 축소 등 정부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계약자 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제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28-16, 2층(삼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법인등록번호	120171-0026977	110111-0194277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홈페이지(<https://www.두산위브더센트럴부평.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1) | ☎1522-0125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경미한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